2021-0027

COMWEL WELCOM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근로복지공단

목 차

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 ····· 2

1. 적용 ····· 2

2. 보험료 부과 · 징수 ····· 9

3.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16

Ⅱ. 직종별 고용보험 신고 ····· 18

Ⅲ. 특고 산재보험 달라지는 내용 ····· 26

Ⅳ. 관할센터 안내 ····· 29

◇ 붙임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방법 ····· 30

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

1 적용

Ⅰ.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Ⅱ. 적용대상직종

<1> 직종별 적용일자

■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21.7.1., '22.1.1. 순차 적용**

- ['21. 7. 1. 적용]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강사, ⑤교육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제외)과 '방과후학교 강사'(14개 직종)

- ['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 직종별 적용기준

보험설계사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유의사항)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 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는 적용 대상이 아님

방문강사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유의사항) 가정 방문에 한함.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택배기사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유의사항)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회원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 모집인만 해당되며, 제휴업체 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방문판매원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유의사항) ① 다단계 방문판매원 ② 일반·후원 방문판매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 (등록) 방문판매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2호(방문강사) 또는 제7호(대여제품 방문점검원)로 적용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신설)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적용대상) '「초 · 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초등학교, 제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호 특수학교, 제5호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의 강사
- (유의사항)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이 아님

건설기계조종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유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화물차주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유의사항)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외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일회적 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Ⅲ. 적용방식과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신고, 피보험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직종	계약형태	사업주	여러사업주와 계약 여부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와 계약	보험회사	전속계약
	보험대리점과 계약	보험대리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회사와 계약	학습지회사	전속계약
	대리점(지국 등)과 계약	대리점	
택배기사	택배회사와 계약	택배회사	전속 계약
	대리점과 계약	대리점	
대출모집인	은행과 계약	은행	전속계약
	대출모집법인과 계약	대출모집법인	
신용카드카드 모집인	카드업체와 계약	카드업체	전속계약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판매(점검)제품 회사와 계약	제품별 회사	다수 사업주와 계약 가능하나 실태적으로 겸업은 사실상 불가능 ※ 다수의 사업주와 계약한 다면 이중취득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운송도급업체와 계약	운송도급업체	겸업금지 (계약서 등에 다른 업체와 겸업 금지)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공립학교와 계약	교육청	다수 사업주와 계약 가능(이중취득)
	국립학교와 계약	정부부처	
	사립학교와 계약	사립학교 이사장	
	위탁업체와 계약	위탁업체	
건설기계 조종사	(레미콘)시멘트제조업체와 계약	시멘트제조업체	다수 사업주와 계약 가능(이중 취득)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와 상이
	원수급인과 계약	원수급인	
	하수급인과 계약	하수급인	
화물차주	화주와 계약	화주	다수 사업주와 계약 가능(이중 취득)
	화물운송업체와 계약	화물운송업체	

Ⅳ. 적용제외

<1> 연령제한

연령기준

■ 65세 이상자에 대한 적용기준

- 시행일('21.7.1.)기준 연령(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특고 고용보험 시행일('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

* 다만, 노무제공자가 65세 전부터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시행일('21.7.1.)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례) 노무제공자가 '21.1.1. 노무제공계약 체결 / '21.4.1. 65세 / 법시행 '21.7.1.
☞ 시행일('21.7.1.) 기준 65세 이상으로 적용제외 대상으로 판단

■ 당연 취득 후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 상실한 65세 이상자*의 재취득 여부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당연)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사례) 노무제공자가 '21.7.1.현재 65세 미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노무제공계약 '21.1.1~'22.12.31) → '21.9.10. 65세 도달 → '21.10월 적용제외기준 미만 소득 발생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 '21.11월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 피보험자격 재취득 ('21.11.1~'22.12.31)

<2> 소득제한

적용제외 소득기준

■ **(적용제외 보수액)**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월보수산정기한 : ①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②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 최초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후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월부터 피보험자격 상실

- 소득 기준 이상인 월에 대하여만 피보험자격 취득하고, 소득 기준 미만인 월에는 피보험자격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일) 월보수액 감소월(80만원 미만이 된 월)의 초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방법)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하는 경우 상실신고로 갈음

Ⅴ. 피보험자 관리

<1> 피보험자격의 구분, 자격관리

피보험자격 구분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일반노무제공자와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 상실신고)

- (단기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 내용확인신고'

* 건설기계조종사 등 해당

피보험자격 관리 주체

■ (신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2> 취득일, 상실일

피보험자격취득일

① **노무제공 시작일**

- 노무제공자(특고)와 사업주가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 다만, 소득기준·연령기준 등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충족월의 초일**

- 계약 유지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월(월중 계약 체결 포함)은 취득 불가, 소득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

- 다만, 연령기준 등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의사항

◈ 월 중 계약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일자

‣ 월중 계약체결로 당월은 80만원 미만으로 보수발생, 다음월에 소득기준 충족시 취득일자는 다음월 초일이 됨

(예시) 7.25. 노무제공 시작일. 7.25~7.31. 보수 20만원, 8.1.~8.31. 보수 150만원

⇨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8.1.

피보험자격상실일

① (월 중간일 이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는 경우

- (상실월의 월보수액 80만원이상) 노무제공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

(사례) '21.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 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80만원인 경우
- 상실일 : 9월16일

- (상실월의 월보수액 80만원미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상실코드 '43')

(사례) '21.7월 보수액 100만원, 8월 보수액 100만원, 9월15일 계약종료, 9월 보수액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 : 9월1일(상실사유 : 코드 43)

② (소득감소) 월 보수액 80만원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일)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초일

<3> 이중취득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는 이중취득 불가)

■ (노무제공1 vs 노무제공자2 vs 예술인) → 모두 취득

- (보험설계사 특고 vs 방판원 특고 vs 예술인) → 보험설계사, 방판원, 예술인 모두 취득

■ (특고 vs 예술인 vs 근로자) → 모두 취득

■ (특고 vs 자영업자) → 특고만 취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하나

-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음(자영업자 계속유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 직권 소멸조치)

2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료 부과 업무 절차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특고 노무제공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 '21.7.1. 성립사업장 : '21.7.14. ○ 관리번호 :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산재)입직신고	○ 계약체결·종료시 :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휴업, 정보 변경 시 - 피보험자 휴업 등 신고,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월보수액 통보**	○ 취득자 전원에 대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 포함)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 월보수액신고서상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실보수, 기준보수)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 : 직권 상실(취득취소)처리, 보험료 미부과 - 취득신고만 하고 월보수액 미신고 : 취득신고서 상의 월보수액으로 부과 - 일부월에 대해서 월보수액 신고 : 직전 월보수액으로 부과 ○ 매월 15일 보험료 구축 ○ 납부 : 보험료 구축월 다음달 10일까지 ○ 보험료 구축 및 고지, 납부기한 매월 동일 프로세스로 운영 ※ 근로자, 산재특고와 다름 ex) 7월 월보수액 8.31. 신고 → 9.15. 보험료구축 및 고지 → 10.10. 납부기한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종료정산	○ 계약 유지하나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감소로 인한 자격 상실 : 상실신고서 제출 또는 월보수액통보로 상실신고 갈음 → 상실월의 월보수액 신고로 공단이 직권 상실, 상실자 보험료 미부과(상실일 : 해당월의 초일) ○ 계약종료 등 사유로 인한 자격상실 : 상실신고서 제출, 해당자 월보수액 통보(수시 정산)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 소멸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소멸월의 월보수액 통보, 신고누락월 월보수액 통보 : 수시정산 ○ 월보수액 통보로 보험료 정산

Ⅰ. 보험료율 및 분담주체

보험료율

■ 1.4% 적용(실업급여 사업만 해당)

※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육아휴직급여 사업 등 미적용)

보험료 분담비율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노무제공자 1/2, 사업주 1/2)

보험료 원천공제

■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Ⅱ. 보수와 (직종별) 기준보수

보수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시)〉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2호)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5호)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등

- 직종별 공제율(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3.9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4.4

직종	공제율(%)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2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4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4.4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6.8
9.「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8.4

직종별 기준보수

■ (기준보수 적용 직종)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 한정) 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건설기계종사자 : 월보수액 2,479,444원, 일보수액 82,648원

- 화물차주 : 월보수액 4,310,000원

☞ 1개월이상 계약→ 노무제공자 취득신고(다음달 15일)→ 기준보수로 보험료 부과

☞ 1개월미만 계약(건설기계조종사)→소득기준 없음 →노무제공자확인신고서(다음달 15일) 매월 제출 → 1일 82,648원 기준 보험료 부과

Ⅲ. 월보험료 산정

<1> 월별 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월별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 1.4%)의 합계

■ 업무 절차

수행주체	일정	처리업무
사업장	매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
↓		
사업장	매월 말일까지	월보수액 통보
↓		
공단	월보수액 신고 다음달 15일~18일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자료 구축
↓		
건강보험공단	매월 22일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사업장	부과자료구축월 다음달 10일	보험료 납부

<2> 개인별 월 보험료

노무제공자

절차	기한	비고
① (사업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일자, 월보수액 기재
↓		
② (사업주) 취득자 전원에 대해 월 보수액 통보	매월 노무제공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험료 산정 보수
↓		
③ (공단) 보험료 부과 * 보수액(실보수, 기준보수) × 보험료율	매월 15일에 자료 구축 * (납부기한) 다음달 10일	월보수액 신고로 정산완료 (보수총액 신고는 월보수액통보로 갈음함)

예) 7월 월보수액 8.31. 신고 → 9.15. 보험료구축 및 고지 → 10.10. 납부기한

■ **월보수액 통보**

- 월보수액 통보서상의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 월보수액 통보서상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는 공단이 직권 상실(취득취소)처리, 보험료 미부과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월보수액 산정

■ **최종 신고된 보수액으로 부과**

① 일부월에 대해서 월보수액 미통보 → 직전월의 월보수액 금액으로 부과

예) '21년 7월 월보수액 통보('21.8.31.), 8월 이후 월보수액 미신고 → 7월 월보수액으로 8월 이후 보험료 부과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만 하고 월보수액 전체 미신고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상의 월보수액으로 부과

예) 피보험취득신고서 제출('21.8.15.) 후 월 보수액 미신고 → 취득신고서 상의 월보수액으로 부과

<3> 보험료 산정 하한 기준보수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 **(월 보수)**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133만원*) 으로 보험료 부과

*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4> 상한 보험료

■ **(보험료 상한액) 월 441,150원**(연 5,293,800원)

<5> 직종별 기준보수의 월 보험료 산정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 월 기준보수 × (노무제공일수/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 건설기계종사자 : 월보수액 2,479,444원
- 화물차주 : 월보수액 4,310,000원

☞ 예) 건설기계조종사 7.20. 1년 계약 체결

: 취득일자 2021. 7. 20., 7월 부과보험료 2,479,444원× $\frac{12}{31}$ ×1.4%

Ⅳ. 보험료 정산

월보수액 통보로 매월 정산

■ **매월 사업주의 월보수액 통보로 매월 정산 실시**

- (월보수액 통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월보수액 통보로 매월 정산 실시

피보험자격 상실자 보험료 정산

■ (원칙)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월과 상실월 전월(월보수액 신고기한 미도래)의 월보수액 통보로 보험료 정산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은 정산 비대상

Ⅴ.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신고

■ **(휴업 등 신고서)** 노무제공자가 휴직,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휴업 등 신고서' 제출

- 휴업 신고기간에는 월별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Ⅵ.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요건

❶ (사업규모)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❷ (보수수준) 노무제공관련 계약 체결 후 월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지원

  * 하한의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의 실제 월보수액 기준으로 판단

❸ (지원 제한)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재산은 전년도 재산자료(지방세법 과세표준액 자료, 행안부) 적용

-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소득은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국세청 과세자료) 적용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②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18.1.1부터 최대 36개월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각각 36개월 지원

③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사례) 근로자·노무제공자 이중취득 시 지원기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지원금 종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대상 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규모 판단시 노무제공자는 제외)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보수 220만원 미만** (단,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무제공자는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지원율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지원 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지원절차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 지원신청 필요

참고사항

(보험료산정예시)월소득이 4,785,660원인 택배원(경비율20.2%)

*4,785,660 × 20.2%=966,703.32원(원단위 미만 절사: 966,703원)

*월보수: 4,785,660-966,703=3,818,957원,

*노무제공자부담보험료: 3,818,957×0.7%=26,732.699(원단위 절사: 26,730원)

*사업주부담보험료: 26,730원

*총보험료: 26,730원×2=53,460원

3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Ⅰ. 구직급여

수급요건

❶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1-[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0.25(1-9÷12)
▸ 0.5(90÷180)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0.67(1-4÷12)≦0.67(120÷180)+0.44(4÷9)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❷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❸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① 기초 공제 수준은 구직급여의 일정비율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산정

■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피보험 기간	3개월			1.3개월		

* 22일 = 주당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Ⅱ.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기간)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수준)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상한 월 200만원)

Ⅱ. 직종별 고용보험 신고

<1> 보험설계사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 직종 정의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적용대상)**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전속설계사)만 적용대상

■ **(유의사항)** 교차모집 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하는 보험설계사)는 적용 대상이 아님

보험가입자

■ 전속설계사와 보험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신고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3.9%

<2>방문강사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직종 정의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유의사항)** 가정 방문에 한함.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해당 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9호에서 정의

보험가입자

■ 방문강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본점, 지사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4.4%

<3>택배기사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3호 직종 정의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유의사항)** 택배기사는 사용하는 배송수단(차량 등)의 종류 및 소유, 차량의 적재량 톤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면허(영업용 번호판)의 보유,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적용

- 택배사업에서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와 집화 또는 배송업무 하나만을 수행하는 기사도 적용대상임
- 도보택배원(실버택배·신용카드배송원등), 자전거택배원 등도 위 정의에 따른 택배기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대상

보험가입자

■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택배회사, 영업소(또는 대리점)(이하 “택배회사 등”이라 한다)의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0.2%

<4>대출모집인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4호 직종 정의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적용대상)**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험가입자

- 대출모집인과 여신금융기관이 위탁계약을 직접 맺은 경우는 여신금융기관이 보험가입자
- 여신금융기관과 별도의 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이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한 경우는 대출모집법인이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3.5%

<5>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5호 직종 정의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적용대상)**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회원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 모집인
- **(유의사항)** 신용카드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제휴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제휴업체 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가입자

- 신용카드 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가 보험가입자
  - 신용카드 모집의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용카드모집인의 보험가입자는 신용카드업자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3.5%

<6>방문판매원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6호 직종 정의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 · 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대상)** 일반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 **(유의사항)**

- ① 다단계 방문판매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② 일반·후원 방문판매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등록) 방문판매원은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른 호에서 규정) 방문강사, 방문점검원은 다른 호로 적용

보험가입자

■ 방문판매원(또는 후원방문판매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업자(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4.4%

<7>대여제품방문점검원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7호 직종 정의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적용대상)**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방문점검원

보험가입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4.4%

<8>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8호 직종 정의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가정 또는 회사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고 적용대상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보험가입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월보험료 = 월보수액 × 보험료율(1.4%)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공제율) 26.8%

<9>건설기계조종사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직종 정의

10.「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적용대상)**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전보조원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건설관리법상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보험가입자

- (원칙)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한 사람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건설기계임대계약 당사자별 보험가입자
  - (원청공사사업자와 계약 체결) 원청공사사업자
  - (하청공사사업자와 계약 체결) 하청공사사업자
  - (고용보험 당연·임의적용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개인직영공사 사업주
  - (레미콘제조업체) 레미콘제조업체 사업주
  - (일반 제조업체) 제조업체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 계속사업으로 별도 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과도 별도로 성립(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월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율(1.4%)
- (기준보수) 월 2,479,444원, 일 82,648원
- (보험료부담) 사업주·노무제공자가 각 1/2씩 부담

단기노무제공자

- (적용) 노무 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은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소득액 무관 적용)

■ (보험료) 단기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는 일 기준보수로 산정

단기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 = 일 기준보수(82,648원)×일수×보험료율

<10>화물차주

(적용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 직종 정의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유의사항)**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외의 화물정보망을 통한 화물운송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보험가입자

■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다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성립

■ 근로자 고용보험 관계와 별도 성립

- 특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 성립

- 산재 및 고용보험 특고 관리번호 별도 부여

월 보험료 산정

■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월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율(1.4%)

■ (기준보수) 월 4,310,000원

■ (보험료부담) 사업주·노무제공자가 각 1/2씩 부담

Ⅲ. 특고 산재보험 달라지는 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 및 신청

가. 보험관계 성립

일반근로자의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특고센터)에 입·이직신고

다.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게 된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속 적용을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 연도마다 **2회**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 가능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제외신청 가능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변경 신고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서」를 제출

※ 종사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 가능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취소 또는 정정 신청 가능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나. 보험료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별도로 부과,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다. 보험료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

2 21년도 특고 산재보험제도 개정 내용

2008. 7. 1.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1.7.1. 15개 직종으로 확대

√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직종

▷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 (2021. 7. 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1.7.1.부터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제한과 산재보험료 면제·경감

가.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1. 특고 종사자의 질병 · 부상,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제외신청 가능

- 따라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21년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당연적용

☆ **’21.7.1.이후 ’21.6.30.이전 입직기간에 대해 적용제외 신청하는 경우, 적용제외 인정**(6월 이전 보험료 미부과)
※ 단,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하는 경우에 限

나. 특고 산재보험료 면제(한시적용)

구분	’21.1.5.~’21.12.31.까지 자진신고	’22.1.1.~’22.12.31.까지 자진신고
보험료 면제비율	100% 면제	50% 면제

■ ’21. 1. 5.부터 ’22. 12. 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이 법 시행일(’21. 1. 5.)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

다.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한시적용)

■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신규, 기존 입직자 동일)

- 대상: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 적용기간 : 2021.7.1.~2022.6.30. (1년간 한시운영)

※ 경감 예시(1)
종사자 甲이 A사업장에 ’21.10.1.부터 종사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22.7.10.)에 소급하여 입직 신고한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입직 신고한 건으로 **경감 비대상**

※ 경감 예시(2)
종사자 乙이 B사업장에 ’22.6.1.부터 종사하여 **법정신고 기한**인 ’22.7.15.까지 입직 신고한 경우?
↳ 유효기간 도과 후 노무제공 신고 된 건은 경감 비대상이나 2022년 6월 입직자를 같은해 7월15일까지 신고한 건은 경감 대상

※ 유효기간(’21.7.1.~’22.6.30.) 경과 후 ‘소급 입직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 건에 한해 소급 경감

Ⅳ. 관할센터 안내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관할 및 연락처

센터명	대표전화	관할지역
서울특고센터	02-6946-0500	서울·강원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부산특고센터	051-790-0300	부산·대구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경인특고센터	032-712-0500	경인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대전특고센터	042-718-0600	대전·광주 지역본부 관내 관할지역 일체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전자팩스번호

센터명	부서명	전자팩스
서울특고센터	특고가입1부	0502-223-3102
	특고가입2부	0502-223-1203
	특고가입3부	0502-223-1204
부산특고센터	특고가입1부	0502-661-1102
	특고가입2부	0502-661-1103
경인특고센터	특고가입1부	0502-451-1102
	특고가입2부	0502-451-1103
대전특고센터	특고가입1부	0502-870-1102
	특고가입2부	0502-870-110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절차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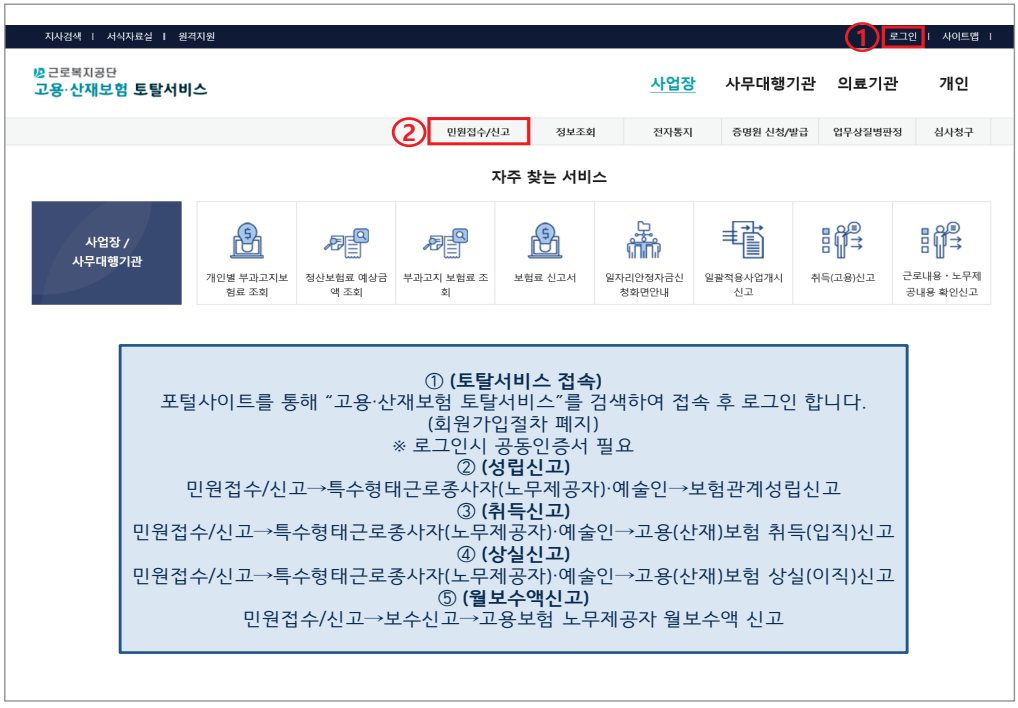

① (토탈서비스 접속)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절차 폐지)
※ 로그인시 공동인증서 필요

② (성립신고)
민원접수/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보험관계성립신고

③ (취득신고)
민원접수/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

④ (상실신고)
민원접수/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 상실(이직)신고

⑤ (월보수액신고)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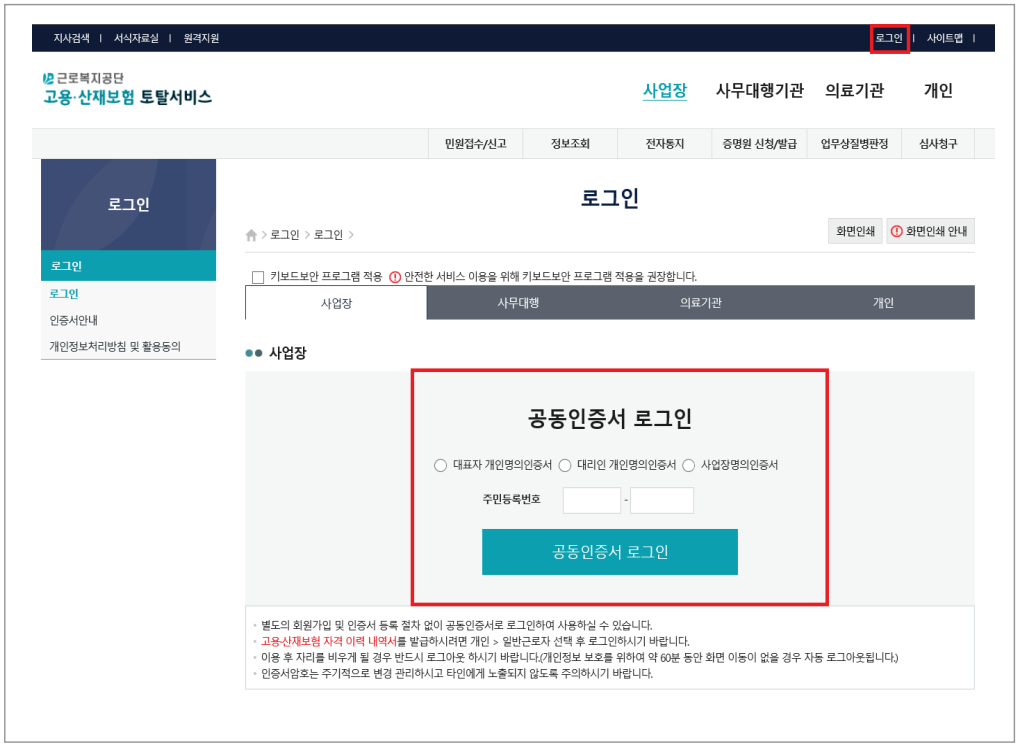

<보험관계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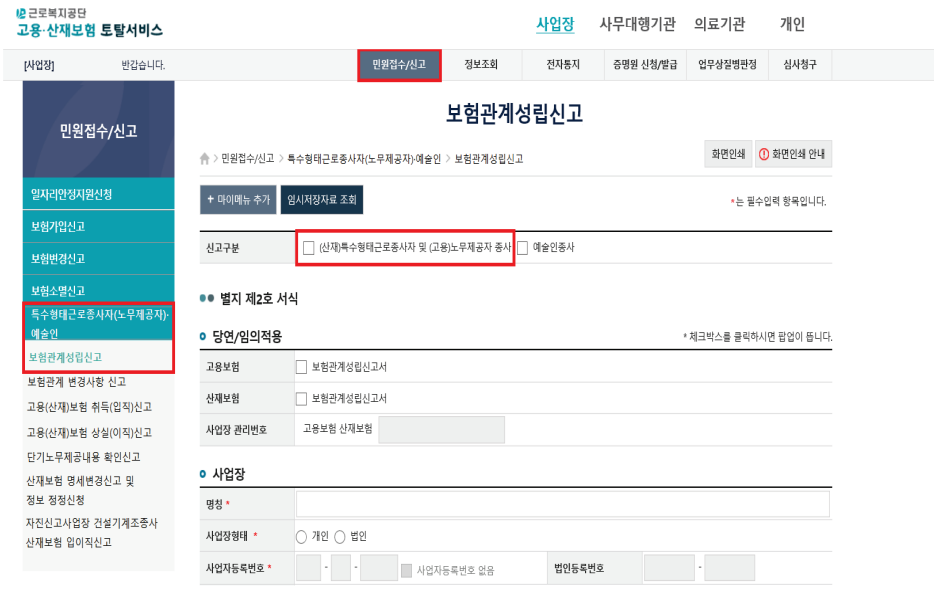

<취득(입직)신고>

<상실(이직)신고>

<월보수액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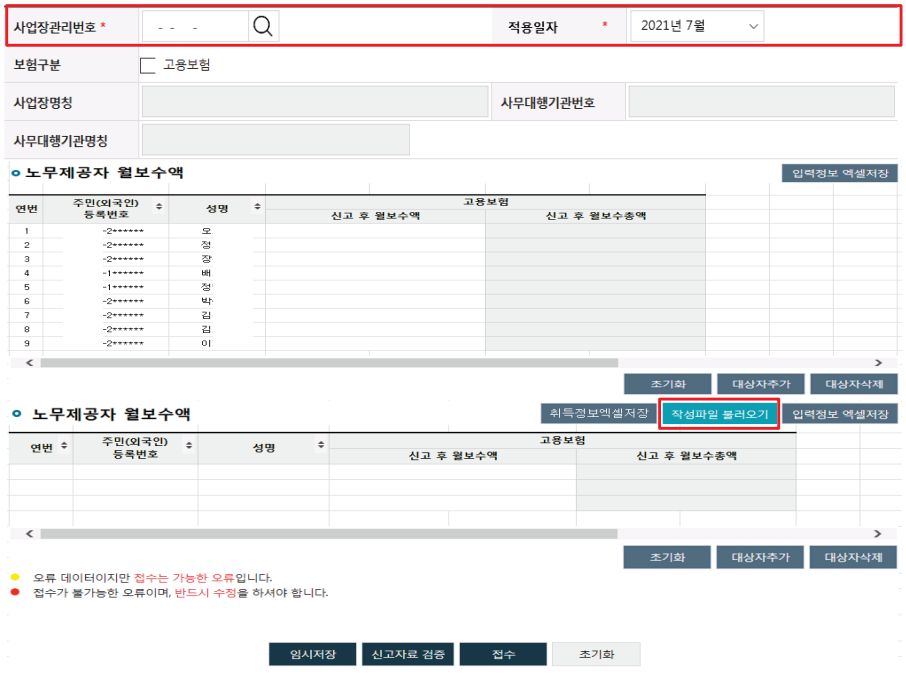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7.1. 시행

근로복지공단